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특회계에 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 신설〉
■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022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1
IV . 검토의견	2
1. 지특회계에 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 신설(안 제81조의2 신설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허성무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4. 22.

다. 회 부 일 : 2025. 4.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국가산업단지를 혁신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하면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신설 등).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0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지특회계에 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 신설(안 제81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구분 -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신설) <u><신설></u>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구분 - (현행과 같음) - <u>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 신설</u> ○ <u>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의 세입·세출</u> - (세입) 1. 일반회계 및 타 특별회계 전입금 2. 지특회계 내 타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일시차입금 4.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 다른 법률에 따라 귀속되는 수입금 - (세출) 1.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2.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지특회계 내 타 계정으로의 전출금 4. 그 밖에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6조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라 함)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됨.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및 편성 체계 >

구분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세종특별 자치시계정
지자체 자율편성	① 시·도 자율 편성사업 ②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③ 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④ 특별지방행정기 관기관사무 수행경비	⑤ 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부처 직접편성	-	⑥ 부처직접편성사업	⑦ 부처직접편성사업	⑧ 부처직접편성사업

주: ① 시·도 자율편성사업(지역자율계정)
 : 지역의 일반적 개발사업으로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②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지역자율계정)
 : 성장촉진지역 등 기반구축사업으로 지출한도(계속소요)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③·④·⑤ 자율편성사업(제주·세종계정)
 : 사업군별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⑥·⑦·⑧ 부처직접편성사업(지역지원계정, 제주·세종계정)
 : 광역협력권 지원을 위한 시·도간 연계사업 등 국가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각 부처가
 시·도 발전계획 및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의거 지자체 요구 등을 받아 부처에서 직
 접 예산 편성

개정안은 허성무의원이 발의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라 지특회계에 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을 지역
 국가산업단지의 발전 및 지역간 산업균형을 추진하려는 것임.

허성무의원이 발의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
 별법안」은 지역산업의 균형발전과 고용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
 역국가산업단지를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개정안은 이러한 지역국가산업단지의 발전을 위해 별도의 계정을 신
 설하여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관련 사업을 위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등을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 신설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이라는 별도 계정을 신설하는 경우 전입금 등 의존재원으로 계정의 재원이 마련됨에 따라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지특회계 내 지역자율계정 및 지역지원계정에는 「주세법」에 따른 주세 등 자체수입이 세입 재원으로 반영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전액 의존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개정안의 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 역시 전액 의존재원으로 세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 바, 현재 「주세법」에 따른 주세 등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추진(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으로 추진)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재원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계정별 주요 세입재원 >

구분	세입재원
지역자율계정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40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등
지역지원계정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60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 「자동차교통관리 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1항제8호의2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등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등
세종특별자치시 계정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등

둘째, 현재 지특회계 지역지원계정에서 지역국가산업단지들을 이미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 계정을 신설할 실익이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지특회계 지역지원계정 중에는 산업단지환경조성(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4년 결산 기준 3,971억 9,700만원 집행), 노후공단재정비지원(국토교통부 소관, 2024년 결산 기준 463억 7,600만원 집행) 등의 사업이 편성되어 추진되고 있어 지역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이처럼 현재 지특회계 지역지원계정에서도 지역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별도 계정을 신설하여 할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6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u>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u> 구분한다.	제76조(계정의 구분) ----- ----- <u>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으로</u> -----.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7.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u>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u> 전입금 8. ~ 12. (생략)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u>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u> 전출금 7. (생략) ③ (생략)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 -----. 1. ~ 6. (현행과 같음) 7. ----- <u>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으로부터의</u> ----- 8. ~ 12.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 <u>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으로의</u>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

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
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
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7. ~ 11. (생 략)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
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4. (생 략)

15.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
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
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16. (생 략)

③·④ (생 략)

제80조(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
입과 세출) ① 회계의 제주특
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
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 5. (생 략)

②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1. ~ 5. (현행과 같음)

6. -----제주
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
치시계정 및 지역산업균형발
전계정으로부터의-----

7. ~ 11. (현행과 같음)

② -----
-----.

1. ~ 14. (현행과 같음)

15. -----제주
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
치시계정 및 지역산업균형발
전계정으로의-----

16.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80조(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
입과 세출) ① -----

-----.

1. (현행과 같음)

2. -----지역
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
정 및 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
으로부터의-----

3. ~ 5. (현행과 같음)

② -----

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
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
계정으로의 전출금

5. (생 략)

③ (생 략)

제81조(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
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종특
별자치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
지원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 5. (생 략)

②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
지원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으로의 전출금

4. (생 략)

③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4. -----지역
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
정 및 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
으로의-----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1조(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
입과 세출) ① -----

-----.

1. (현행과 같음)

2. -----지역
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
정 및 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
으로부터의-----

3. ~ 5. (현행과 같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지역
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
정 및 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
으로의-----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1조의2(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

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4.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2.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u>3.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 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 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 로의 전출금</u> <u>4.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 에 필요한 경비</u>
--	--

문 의 처
02)6788-5157